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6. 4. .
제 안 자 : 행정안전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의안명	제안자	제안일	심 사 경 과
소방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호영의원 (2209527)	2025.04.01.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5.07.01.)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6.03.24.) 상정/의결(대안반영 폐기)
	김성회의원 (2213828)	2025.10.31.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6.02.05.)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26.03.24.) 상정/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2026.03.24.)는 위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위 2건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5.03.26.)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방청장에게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소방활동을 하게 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방청훈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내실 있는 소방활동 자료조사가 이뤄지지 못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활동 자료조사의 근거를 이 법에 마련하여 원활하고 신속한 소방활동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또한, 현재 소방공무원 등의 소방활동 중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보험 가입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에 따르고 있어 배상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소방청장과 시·도지사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의무를 법률에 규정하여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소방활동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의4 신설).

법률 제 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공무원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기 위하여 건물의 구조, 용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조사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를 각각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7까지로 하고, 제1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4(보험 등의 가입)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등의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한 보험 또는 공제는 제16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소방활동) ① · ② (생략)	제16조(소방활동) ① ·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소방공무원은 원활한 소방활동을 하기 위하여 건물의 구조, 용도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소방활동 자료조사를 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자료조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4(보험 등의 가입) ①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등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 가입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제16조의4(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생 략)	제16조의5(소방자동차의 보험 가입 등) (현행 제16조의4와 같음)
제16조의5(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생 략)	제16조의6(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현행 제16조의5와 같음)
제16조의6(소송지원) (생 략)	제16조의7(소송지원) (현행 제16조의6과 같음)